

[별표 4의2] 입주자 선정 기준 (제14조의2제2항 관련)

<p>1. 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4인 이상 : 5점 나. 3인 : 3점 다. 2인 : 1점</p>
<p>2.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[별지 5]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: 2점</p>
<p>3.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: 3점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: 3점</p> <p>※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한다.</p>
<p>4.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(특별시·광역시 포함)·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5년 이상 : 3점 나. 3년 이상 5년 미만 : 2점 다. 3년 미만 : 1점</p>
<p>5.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(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)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24회 이상 : 3점 나. 12회 이상 24회 미만 : 2점 다. 6회 이상 12회 미만 : 1점</p>